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8. 11. 21.(수) / 총 4매(본문3, 붙임1)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이상일, 사무관 정송이 · 김병오 • ☎ (044) 201-3838, 3839
보 도 일 시		2018년 11월 22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22.(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자동차 제작결합심사평가위 → 안전·하자심의위로 확대 개편 기존 심의 기능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기능 추가·22일부터 위원 공개 모집

- 자동차 제작결합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되어 확대 개편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17.10)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 2019년 1월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 현행 자동차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구성·운영되었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합 조사 및 시정 명령 등과 관련하여 총 108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합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과 책임도 강화된다. 교환·환불 중재규정의 제·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개정 권한이 신설되고, 직무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과 업무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안전·하자위원회 비교 >

구분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현행)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개편)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7
운영기간	'03.1월 ~ '18.12월	'19.1월 ~
주요업무	제작결함 심의	제작결함 심의 및 교환·환불 중재(신설)
구성	자동차 관련 전문가 25인 이내	자동차·법학·소비자보호 전문가 50인 이내* * 초기 30명 규모로 구성·운영

□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자동차 분야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 공모 대상은 자동차 분야(17인)이며*,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문성과 청렴성을 두루 겸비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세부 모집분야) 원동기·동력전달장치(5명), 주행·주향·제동·완충·시계 확보장치 등(6명), 차체·등화·전기·전자·연료 및 기타(6명)

** 법학 및 소비자보호 분야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기관추천 방식으로 선임

○ 심사위원단은 공공기관 임원, 학계 원로급 교수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며 지원자의 자격·역량 심사와 인사 검증 등을 거쳐 최종 17명을 선정한다.

○ 공고 내용, 제출 서류, 접수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위원 공모에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동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병오 사무관(☎ 044-201-383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위원회 개요 및 위원 자격요건**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7 및 제48조의8
- (구성) 50명 이내(자동차분야 1/2 이상)
- (임기) 2년, 연임가능
- (조직) 전체 위원회, 중재부, 사무국(교통안전공단)

 위원회 업무

1.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중재규정 제·개정
2. 제작 결함의 시정 관련 사항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중지명령, 자기인증 조사, 시정조치 및 명령, 제작결함조사, 안전도평가, 무상수리 관련 사항)
3.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위원 자격요건

분야	자격요건	최소인원
법률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2.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자동차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자동차 전공자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자동차 업무 실무 경험자 5.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한 자동차 실무 경험자 6.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자동차 분야 10년 이상 종사	위원 1/2 이상
소비자	7.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 8. 소비자기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	